

청 와 대 민 원

제목 : 진실을 밝혀주세요.

민원인 : 임그루

우편번호 36322

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 다세대주택a동 103호

휴대폰 010-2878-2177

내 용

박근혜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울진에 살고 있는 임그루입니다. 통신회사 KT 공기업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법원에서 증거 목살하여 판결 합니다. 의사진단서 회사사규도 인정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은 증거가 판결문 인정 증거호수에 기록되어 있고, 같은 증거 호수가 판결문 채택증거에 있고 배척증거에도 있습니다. 모순되고 잘 못됐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이유 없이 기각 혹은 각하 판결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만약 나라의 정책이 사회 정의와 인권을 보호하여 서민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라면 이 내용을 주위 참모들에게 올바른 것인지 확인하도록 지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힘없는 한명의 개인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히 이 사건 진실을 밝힘으로서 국민을 위하는 사법부로 되고, 바르게 일하는 KT가 되고, 불법 파업집회가 줄어들고 조합원을 위하는 노동조합이 되는데 보탬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부디 바쁘신 정무활동 속에서도 직접 이러한 문제들을 돌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1. KT사건 대법원 2016두46168 진행 중 상고이유서 1부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내용)

☞.판사님은 억울한 건 알겠는데 옛날사건이고 해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합니다.(2010재누62 변론) 이런 예로 대법원에서 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심합니다. 그 때는 로스쿨출신 판사님들에게 재판 받게 해주세요.

2. KT노동조합사건 2016재나35 준비서면 1부. 갑 제17호증 1장 노동조합계시판 4장(총5장)

이 사건은 2016년 7월22일 변론 했고 9월2일에 판결 선고합니다. 5대 노동조합 때 1994년쯤 노동조합 규정에 신분보장제도가 생기고 부터는 잦은 파업집회로 노조간부들이 대량해고 되었다가 복직되고 했습니다. 갑 17호증은 1995년 5대때 불법파업 집회 한 노조간부님들 명단이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95년 5대 때만) 6대 노동조합에서도 불법 파업집회로 노조간부님들이 대량 해고됐고, 7대 노동조합에서도 불법 파업집회로 노조간부님들이 대량 해고됐습니다. (5,6대는 불법 집회로. 7대는 명동성당 불법 파업집회로.) 어떤 분들은 해고됐다가 복직되고도 또 불법 파업집회로 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 분들은 노동조합의 신분보장규정을 근거로 소송비용 및 복직 될 때까지 근무자와 동일한 월급에 복지혜택을 받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10년 넘게 혜택보고 복직한 분들도 여러 명 됩니다.

제가 8대 노동조합이 생긴 2003년에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할 수 없잖아요!' 사건으로 부당해고 되어 노동조합에 신분보장 기금에 대하

여 문의하니 노조간부님들은 파업집회하다 피해당한 것만 조합 활동 피해자로 인정되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노조게시판에도 항의했는데 답변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노동조합게시판 4장참고)

☞ 행정법원에서 민사법원으로 이송시켜 노동법에서 보장된 조합원의 알 수 있는 권리를 묵살했으며, 노동조합의 “신분보장”규정이 법률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밝힐 수 없게 했습니다. 현실의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3.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1권

(2002년 5월경 전국의 대학신문사, 학생회 및 언론사 400부 정도 제보. 2008년 6월경 전국의 대학신문사, 학생회 및 언론사 800부 정도 제보)

☞ 사법부의 현실을 국민에게 알려 로스쿨제도 시행하는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 타

☞ <http://www.ilovekt.org> 이곳 인터넷주소 ‘현장의 목소리’- 게시판에 그 동안 닉네임 ‘그루’ 로 소송내용을 계속적으로 올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8월 일 임그루

박근혜대통령 귀하